#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11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송기헌・김 윤・박정하

백혜련 • 주철현 • 강훈식

김태년 • 위성곤 • 허 영

박 정・정성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사람들을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

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51조제5항 및 제6항). 법률 제 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 후단 중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감면(減免)하며"를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액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5세"를 "65세"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진료) ① ~ ④ (생 략)	제51조(진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⑤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			
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	<u>대통령령으로</u>		
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감면(滅</u>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		
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	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90		
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	범위에서 감액하며		
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⑥ <u>75세</u> 이상으로서 다음 각	⑥ <u>65세</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			
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			
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			
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			
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